

'18년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을  
반영한  
IPA  
청렴·윤리경영  
리스크

**대처방안  
가이드북**



III

'18년 개정 된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사례

01.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56
02. 수의계약 체결 제한	58
03. 가족 채용 제한	60
04.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62
05. 사적 노무 요구 금지	64

## 01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감사팀 A팀장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하고 회계감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前 B팀장과 골프를 치기로 약속하였다. 골프실력이 월등한 前 B팀장과 함께 오랜만에 골프를 칠 생각 때문에, A팀장은 前 B팀장이 직무관련자인지, 퇴직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천의 한 유명한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

###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접촉대상)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접촉유형)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 제한되는 접촉 형태(예시)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

■ 질의&답변

-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행도 사전 신고대상인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여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① 여행 목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예: 생활권역 근교 산행·등산, 전시회 관람, 놀이공원 방문, 맛집 탐방), ② 이동 거리가 공직자의 주소·거소지가 소재한 통상적인 생활권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③ 여행 일정이 당일 여행으로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 관련 규정

#### [IPA 임직원 행동강령]

##### 12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사장이 정한다.

## 0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번 채용절차 설계는  
와이프 회사와  
수의계약하면 되겠네..



인재개발팀 A차장의 아내는 인사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채용절차를 앞두고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춘 채용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던 A차장은 아내의 컨설팅회사에 새정부의 기조에 맞춘 채용절차를 연구하는 직원이 있음을 알고 아내의 컨설팅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원, 계약업무담당,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는 자회사 등과 수의 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
  - (임원) 임원 자신,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
  - (계약업무 담당자) 계약업무 담당 직원 자신, 가족이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자회사 담당자)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자신, 가족이 소속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 ※ 단,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
- 예시
  - 모 군의원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37회, 6억1,000만원)을 체결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모 군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 관련 규정

#### [IPA 임직원 행동강령]

#####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03

가족 채용 제한



인천항보안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A과장은 인천항보안공사에 하반기 채용공고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다. 평소 토익점수가 낮아 취업을 어려워하는 동생에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인천항보안공사 인사담당자에게 토익점수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토익점수가 없지만 학점이 뛰어난 동생은 서류전형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평소 형의 영향 때문인지 인천항보안공사를 인천항만공사로 착각하고 면접에 임해 임원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원, 계약업무담당,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금지
  - (임원)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자신의 가족 채용 금지
  - (인사업무 담당자) 인사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 채용 금지
    - ※ 인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 포함
  - (자회사 담당자) 자회사 등에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자신의 가족 채용 금지
- 예시
  - 지방의회 상임위 위원장의 자녀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에 채용되었으나, 채용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짐
  - 모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



[IPA 임직원 행동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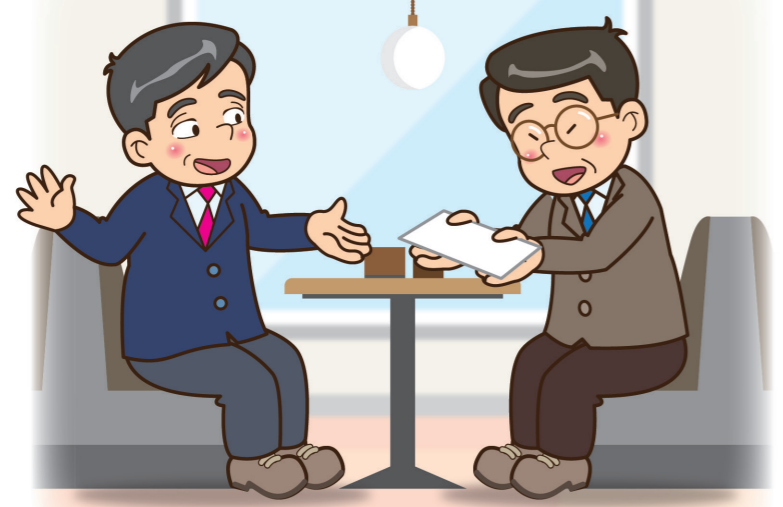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04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아니 뭘 이런걸...  
언제든 궁금한게 있으시면..

덕분에 양도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다.



#### 사례

재무관리팀 A대리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세무전문가이다. A대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세무 업무 때문에 甲세무법인에 위탁하여 일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언·자문 받고 있다. 또한 A대리는 양도 소득세법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다. 이 사실은 甲세무법인의 B세무사는 A대리에게 자신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상담받기를 원했다. A대리는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B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문제를 상담해줬다. 고마움을 느낀 B세무사는 A대리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임직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예시
  - 교육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80만원을 받고 정직 처분
  - 모 기관 공무원이 직무관련 협회 임원으로 임명되고, 연찬회 과정에서 해당 협회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 수수

#### 관련 규정

#### [IPA 임직원 행동강령]

##### 제9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05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인재개발팀 A대리는 최근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집 이사문제로 힘들어 했다. 그러던 중 회사 노무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자문을 받는 甲노무법인의 텅치가 크고 힘이 좋은 B담당자에게 이사를 같이 할 수 없냐고 부탁을 하였다. B담당자는 다음 계약을 염두 해 두고 A대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A대리의 이사를 도와주었다.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구체화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적용 제외
- 예시
  -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편의를 제공 받음
  - 모 기관장이 자신의 전원주택 가꾸기에 소속직원을 동원하여 감봉처분

관련 규정

【IPA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